

#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4,500,000	15,435,000
일반회계	510,000,000	15,300,000
특별회계	4,500,000	135,000
기타특별회계	4,500,000	135,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75,306	83,259
주택사업특별회계	141,733	4,252
의료급여기금관리특별회계	377,043	11,311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58,934	10,76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5,984	15,480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31,000	930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300,000	9,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94,461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2,350,045천원,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 4,000,000천원, 내부유보금 3,544,416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구·직제 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